

의안번호	2200492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4. 7.31.
추 계 번호	24D058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¹⁾

-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억 4,800만원, 2030년 33억 4,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9억 6,400만원(연평균 31억 9,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지원(안 제1조, 제3조제10호 신설)	3,048	3,118	3,191	3,266	3,342	15,964	3,1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제3조제10호(회원)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	의무규정

1)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외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제3조제10호 (회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단체에 대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시 소요비용은 현재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 운영’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16개 공법단체 중 6·25 관련 단체로서 성격이 유사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지원예산을 적용하여 산출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15~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의수당²⁾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설립 및 지원(안 제1조 및 제3조)

-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경우,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국가 보조금 교부³⁾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87호)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입대일 기준 17세 이하 참전등록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일반 참전유공자를 의미)는 2024년 6월 기준 생존자 7,165명, 사망자 25,384명으로 총 32,549명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6개의 보훈공법단체 중 6·25관련 단체로서 성격이 유사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고 가정
 - 현재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 운영’사업에서는 16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사무비, 중앙회 활동비, 지부 활동비, 사업비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16개 공법 보훈단체에 대한 2024년 지원예산은 345억원임([표 2] 참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표 2] 16개 공법 보훈단체 국고보조 현황: 2024년

(단위: 명, 백만원)

단 체 명	회원수	국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광복회	8,879	1,771	739	718	3,2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4,860	2,865	792	4,520	8,177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93,207	1,821	770	78	2,669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58,302	1,421	794	22	2,237
무공수훈자회	54,707	1,828	806	1,351	3,985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3	147	50	95	292
4·19민주혁명회	133	194	102	—	29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183	169	78	397	644
4·19혁명공로자회	237	169	91	3	263
특수임무유공자회	3,896	1,492	197	377	2,066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35,296	1,876	741	197	2,814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41,174	1,671	841	110	2,622
월남전참전자회	85,721	1,676	835	443	2,954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118	773	74	57	904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033	495	34	56	585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1,330	634	48	56	738
합 계	591,079	19,002	6,992	8,480	34,474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른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설립·운영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함

(1) 인건비

-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는 6·25관련 단체로서 성격이 유사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와 동일하게 1본부·17지부·231지회로 구성⁴⁾
- (직원수)는 중앙회 21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

4)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원의 인원과 전국단위 분포를 고려할 때, 지부·지회 운영 등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와 유사한 조직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

국장 4명, 과장 4명, 사원 8명, 운전원 1명) 및 지부 68명(17개 지부당 지부장 1명·사무국장 1명·과장 1명·사원1명 등 총 4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급여액)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와 동일하게 2024년 월지급액 기준 회장 2,153천원, 부회장 1,879천원, 감사 1,879천원, 사무총장 1,831천원, 국장 1,772천원, 과장 1,679천원, 사원 1,650천원, 운전원 1,760천원, 지부장 1,714천원, 지부국장 1,668천원, 지부과장 1,656천원, 지부사원 1,650천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⁵⁾
- (퇴직금) 퇴직금은 명예직(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제외한 국장, 과장, 사원, 운전원, 지부장, 지부국장, 지부과장, 지부사원을 대상으로 합계한 연간급여액의 1/12 적용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전체 급여액에 16개 공법단체의 보험료를 6.16%를 추계기간 동안 적용⁶⁾

5) 급여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0%로 나타나는데, 본 추계에서는 보훈공법단체 임직원의 향후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6)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노령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납부자 등도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정한 기관부담금(과다 추계의 가능성) 대신 유사 공법단체의 보험료를 적용

[표 3]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 시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중앙회 (1개)	회장(1인)	28	28	29	30	31	
	부회장(1인)	24	25	26	26	27	
	감사(1인)	24	25	26	26	27	
	사무총장(1인)	23	24	25	26	27	
	국장(4인)	91	94	97	100	103	
	과장(4인)	86	89	92	95	98	
	사원(8인)	169	175	180	186	192	
	운전원(1인)	23	23	24	25	26	
지부 (17개)	지부장(지부당 1인씩 총17인)	373	385	398	410	423	
	국장(지부당 1인씩 총17인)	363	375	387	399	412	
	과장(지부당 1인씩 총17인)	361	372	384	396	409	
	사원(지부당 1인씩 총17인)	359	371	383	395	407	
소계(a)		1,924	1,986	2,050	2,115	2,182	10,257
퇴직금(b)		152	157	162	167	172	811
기관부담금(c=a×6.2%)		119	123	127	131	135	636
합 계 (a+b+c)		2,195	2,266	2,339	2,414	2,490	11,704

주: 퇴직금은 명예직(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제외한 국장, 과장, 사원, 운전원, 지부장, 지부국장, 지부과장, 지부사원의 연간급여액 합계의 1/12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운영비 및 사업비

□ 운영비는 사무비, 중앙회 활동비, 단체 행사비, 지부 운영비, 지회운영비로 구분

- 16개 공법 단체의 운영비는 단체별 회원규모에 따라 중앙회, 지부, 지회 등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6·25관련 단체로서 성격이 유사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중앙회 사무비 등(사무비 연 8,200만원), 중앙회활동비(연 7,000만원), 17개 지부별로 지부운영비(월 59.4만원), 231개 지회별로 지회운영비(월 20.5만원)로 구분하여 산출함

–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비, 중앙회 활동비, 지부 운영비, 지회 운영비 단가의 변동은 없었으므로 향후 5년간에도 동일하게 유지함

□ 사업비는 호국보훈의 날 행사 등 선양활동 비용 1,100만원으로 산출하고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표 4]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 시 운영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운영비	사무비	82	82	82	82	82	408
	중앙회 활동비	70	70	70	70	70	350
	지부 운영비 (17개×59.4만원×12개월)	121	121	121	121	121	606
	지회 운영비 (231개×20.5만원×12개월)	568	568	568	568	568	2,841
사업비		11	11	11	11	11	55
합계		852	852	852	852	852	4,261

주: 사무비 등은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과 회관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와 유사한 규모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159억 6,400만원으로 추정

[표 5]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2,195	2,266	2,339	2,414	2,490	11,704
운영비 및 사업비	852	852	852	852	852	4,261
합 계	3,048	3,118	3,191	3,266	3,342	15,9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